**직장가입자와 비상근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1.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비상근 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3.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은 비상근 근로자와 같이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근무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4. 임시 교원, 조건부 교원, 기간제 교원, 강사 등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상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

5.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은 비상근 근로자와 같이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근무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비상근 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비상근 근로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상근 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3.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은 비상근 근로자와 같이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근무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은 비상근 근로자와 같이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근무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상시 근무 여부는 비상근 근로자와 같이 사회 통념에 따라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임시 교원, 조건부 교원, 기간제 교원, 강사 등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상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시교원, 조건부교원, 기간제교원, 강사 등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상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서는 상근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

**5.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은 비상근 근로자와 같이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근무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비상근교직원은 비상근근로자와 같이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근무하는 교직원을 말한다.